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295호
2. 제출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24. 10. 16.
4. 회부일자 : 2024. 10. 18.

II. 제안이유

- 신청사 건립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금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기금 존속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1.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조례 제2조2)

-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 연장

IV. 참고사항

1. 관계법규 : [별첨 7]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2. 예산조치: 해당없음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별첨 2])

3. 협 의: 감사관, 예산담당관, 민주생활시민교육과 협의완료

4. 기 타

- 입법예고(2024. 8. 8. ~ 8. 29.) 결과: 의견 없음
- 교육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별첨 4]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별첨 5]
- 학생인권영향평가: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별첨 6]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심혁보)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4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295호로 제출되어 2024년 10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신청사 건립기금의 운용

- 동 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조성하기 위하여 2016년 7월 7일 시행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입니다.
 - 당초 동 기금은 2016년에 조성되어 2020년 말까지 존속예정이었으나 2019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이행에 따른 신청사 건립 사업규모 축소 및 연수원 기본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 기간 연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에서는 동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나. 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검토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의2의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기금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5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¹⁾.
- 먼저 동 조례안에 따라 설치된 기금 사업의 존속기한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 서울시교육청은 신청사 건립과정에서 2차례 공사중지가 있었는데, 제1차 공사중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조달청에서 철근 공급 지연 통보에 따라 CIP흡막이벽 설치가 지연됨에 따라 2022년 6월 13일부터 7월 5일까지 22일간 발생하였습니다²⁾.
 - 제2차 공사중지는 신청사 부지 내 오염토 발생신고에 따라 토양정밀조사용역 실시 및 오염토 반출 공사가 진행됨에 따른 것이며, 2023년 1월 25일부터 4월 16일까지 82일간 발생하였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생략

2) 「교육청 신청사 건립·이전 추진계획(안)」(청사이전추진단-373, 2023.8.3.)

[표-1] 신청사 건립 공사 주요 추진 경과

추진일정	추진내용
2006. 4. 29.	서울시교육청 청사 신축·이전 계획 수립
2016. 7. 7.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정
2022. 3. 23.	착공식
2022. 6. 13.~7.5.	제1차 공사중지 (관급자재 수급 곤란)
2022. 1. 5.	오염토 발생신고
2022. 1. 25.~4. 16.	제2차 공사중지
2023. 1. 16.~2. 24.	토양오염 정밀조사 용역
2023. 4. 17. ~2024. 4. 10.	토양오염 반출정화 공사

- 이러한 사유에 의한 공사 지연으로 신청사 건립공사는 당초 2021년 준공 예정에서 2025년 12월 준공으로 연기되었고, 현재 제4차 건축 공사가 2025년 12월 준공 예정인 상황입니다.

[표-2] 신청사 시설비 관련 공사 계약 현황

(단위: 원)

공종명	차수	계약금액	계약일	착공(수)일	준공(예정)일	계약자	공사 추진현황
건축	총차	81,522,501,000	2021-12-15	2022-01-01	2025-11-10	진흥기업(주) 대표 박상신 외 1개사	[건축공사] 지하 1~2층 골조공사
	1차	499,730,000	2021-12-15	2022-01-01	2022-02-28		
	2차	21,937,307,000	2022-09-08	2022-09-06	2024-10-08		[기계공사] 배관공사
	3차 (진행 중)	19,000,850,000	2024-10-08	2024-10-09	2025-05-31		
	4차 (예정)	40,084,614,000 ◦ 기금 322억원 ◦ 교특 78억원	2025. 5. 예정	2025. 6. 예정	2025. 12. 예정		[토목공사] 띠장철거
전기	총차	7,747,192,880	2022-01-28	2022-02-07	2025-11-20	봉등전기(주) 대표 정기선 외 1개사	배관공사
	1차	50,000,000	2022-01-28	2022-02-07	2024-09-16		
	2차 (진행 중)	3,300,000,000	2024-09-13	2024-09-17	2025-05-15		
통신	총차	4,525,891,320	2022-01-25	2022-02-03	2025-11-20	중앙티디아이(주) 대표 최미서 외 1개사	배관공사
	1차	48,381,000	2022-01-25	2022-02-03	2024-09-16		
	2차 (진행 중)	3,498,000,000	2024-09-05	2024-09-17	2025-08-20		

소방	총차	5,087,408,000	2022-02-08	2022-08-01	2025-11-20	태흥소방산업(주) 대표 최민호	배관공사
	1차	47,080,000	2022-02-08	2022-08-01	2024-09-16		
	2차 (진행중)	1,500,000,000	2024-09-04	2024-09-17	2025-03-31		
토양오염 반출정화	진행중	5,627,039,440	2023-04-14	2023-04-17	2025-11-10	에코필 대표 고성환	흙막이 내부 완료

- 따라서 실질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신청사 이전은 2026년 1~2월이 되어서야 사무실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에도 사업비를 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마지막으로, 동 기금의 조성액 및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총 기금 조성액은 토지 매각 대금에 의한 1,217억원과 보통교부금 330억, 이자수입으로 인한 1,689억입니다.
 - 기금의 지출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의 경우 지출계획현액 377억 5천 6백만원 대비 지출액은 18.1%인 68억 2천 7백만원에 불과하였고, 2024년의 경우에도 지출계획액 670억 9천 1백만원 대비 2024년 11월 6일까지 지출액은 12.8%인 173억 7천 2백만원에 불과합니다.
 - 이처럼 신청사 총 사업비 1,689억 중 2024년 11월 6일까지 21.8%에 해당하는 368억원만이 지출된 바 2025년까지 추가로 1,321억의 지출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3] 기금의 연도별 사업비 집행실적 (2024.11.6. 기준)

(단위: 천원)

연도	계획대비 지출액 ³⁾ 집행실적		
	계획 ⁴⁾ (A)	지출액 (B)	집행률 (%) (B/A*100)
2017	308,000	43,898	14.3

2018	3,292,000	967,182	29.4
2019	7,595,112	3,500,484	46.1
2020	4,625,530	3,677,093	79.5
2021	3,046,436	1,028,589	33.8
2022	20,050,488	3,424,678	17.1
2023	37,756,314	6,826,653	18.1
2024.1.1.~11.6.	67,091,293	17,352,284	25.8
합계	143,765,173	36,820,861	25.6

○ 따라서 신청사 건립기금은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으로 기금의 존속기간을 2027년까지 2년 연장하는 것에 대한 기간의 적정성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사 준공 및 관련 경비의 지출 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2년간의 연장기간은 사업완수를 위한 필요한 기간이라 사료됩니다.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동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⁵⁾ 절차 또한 이행하였는바 (예산담당관-7031, 2024.8.1.), 신청사 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별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2180-8263)	입법조사관	이성운(2180-8266)
----------	----------------	-------	----------------

3) 지출액은 예치금 및 사고이월액 제외

4) 당해 연도 최종 변경계획안 금액

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② <생략>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준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